

1. 일본의 녹색구매법 운영 현황

□ 개요

- 명칭 : 국가등의환경물품조달의추진등에관한법률(일명 ‘녹색구매법’)
 - 목적 : 국가, 독립행정법인,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부문에서 환경부하가 적은 상품(물품·용역)을 조달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구현 및 정보제공
 - 제정 2000.5, 시행 2001.6(자치단체는 2001.4.1부터 시행)
- 소관부처 : 일본 환경성

□ 법률의 주요내용

환경대신은 매년 조달방침(특정조달품목 포함)을 정하여 공표하고, 관계기관의 장은 이 방침에 근거하여 기관별 조달방침을 작성·공표, 구매 및 그 결과를 환경대신에게 보고

가. 각 기관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

- 각 기관은 매년도 ‘조달방침’을 작성·공표
- 각 기관별로 조달시책 추진결과를 취합·공표하고 환경장관 등에 통지
- 환경장관이 각 장관 등에 필요한 요청

나. 특정조달 품목 등

- 중점적인 조달을 추진하는 환경상품의 종류(특정조달품목), 판단기준, 목표의 설립 방법 등에 대해 규정
 - 판단기준 : 인쇄용지의 경우 고지배합률이 ०% 이상, 백색도가 ०도 이하
 - 목표달성 : 품목별 조달물량을 구매물량으로 나눈 값의 합으로 측정
 - 특정조달품목 : 종이류, 문구류, 기기류 사무용기기, 가전제품, 조명기기, 자동차, 타이어, 제복·작업복, 인테리어·침구, 작업용 장갑, 양말, 설비, 자재, 역무 등

다. 각 기관의 조달방침 실행

- 각 부처 및 독립행정법인, 각 현(縣), 각 법인의 장이 매년도 작성
 - 1) 특정조달품목의 조달의 목표
 - 예) ०년도에는 다음 품목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상품을 조달(정보용지 ०%이상, 복사기 ०%이상, 저공해차 ०대이상)
 - 2) 특정조달품목 이외에 조달을 추진하는 환경상품의 종류 및 목표
 - 예) 대상품목 선택 및 목표결정방법은 각 省 및 법인의 판단에 의하되, ०년도에 대형자동차는 저환경부하 차량을 ०%이상 조달
 - 3) 기타 관청회계과장을 의장으로 각 부국의 담당관을 멤버로 하는 그린구입 추진 연

학회의 구성

라. 정보 제공

- 환경라벨 등의 정보제공단체는 과학적 의견, 국제적으로 적합성을 인정받은 정보를 공유
- 국가는 제품 제조업체, 환경라벨단체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정리·분석하여 제공

□ 운영실적 평가 (Mr. Sato 일본GPN사무국장 의견)

가. 특정조달품목 지정현황

- 제조업체 관심증대로 특정조달품목의 지정건수가 지속 증가
 - 제도 시행 첫해인 '01년에는 101개 품목을 운영하였으며, '02년에는 154개 품목으로 확대
- ※ '03년도에는 30~40개 품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(2월말 결정)
- 공공부문 구매가 전체구매의 20%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
 - $\frac{3}{4}$: 지자체, $\frac{1}{4}$: 중앙정부

나. 주요 이해관계자의 반응

-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 구매대상기관
 - '02년말 현재 중앙부처 및 47개 현·도(縣·道) 및 12개 대도시에서 녹색구매실시 및 700개 도시의 47%가 녹색구매 참여
 - 관심품목은 종이제품, 사무용품, 사무용 가구 및 정보통신제품, 유니폼, 전기전자제품 등임.
 -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, 각 부처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특정조달품목으로 환경성에 적극 건의하는 등 부처간 협력도 기대이상으로 평가(예 ; 국토교통성은 건축자재류의 선정을 건의 등)
 - 그러나 규모가 적은 자치단체(시)의 경우에는 환경담당 직원이 적어 녹색구매가 새로운 업무로 작용하고, 아직까지는 친환경제품보다는 재활용정책 등에 관심이 높다는 의견도 있음.
 -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
 - 설문조사결과, 75%의 기업이 동법 시행으로 친환경상품의 매출 증가 및 74%의 기업이 친환경상품 브랜드 숫자를 증가시켰음.
 - 자사제품이 특정조달품목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반면, 일부에서는 조달품목 선정 기준이 너무 낮거나 높다는 의견 제기
 - 일반시민
 - 직접적으로 동 법률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.

다. 향후 개선사항

- 특정조달품목의 선정기준 개선 필요
 - 현재는 주로 재활용율, 에너지절약 등 단편적인 환경성을 강조하고 있으나,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제품위주로 선정돼야 함.
- 특정조달물품 선정작업의 개선
 - 품목 확대에 따라 기준설정 등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있어, 개선책으로는 정부 규정 이외에 환경표지, GPN 가이드라인 등의 활용필요
- ※ 현재 일본의 환경표지제도는 민간(일본환경협회)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음.
- 대상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
 - 구매담당자들이 자발적으로 녹색구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필요

2. EU 회원국의 녹색구매정책

□ EU 회원국의 녹색조달 법적근거

- EU는 국가간 기본조약과 EU차원의 공통법률 및 공적 조달관리의 주요 원칙을 설정·운영
 - 주요 조달원칙은 계약자치(freedom of contract)를 존중하되 비차별성(non-discrimination), 투명성(transparency), 형평성(proportionality) 조건의 만족 등임.
 - ‘자유계약의 원칙’은 계약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선정은 자유이나, 선택된 제품과 서비스는 환경정책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자유선정은 유럽공동시장 조약을 준수하여야 함.
 - 국적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을 것에 대한 의무
 - 국가간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정책의 통합 촉진
 - 노동력, 상품, 서비스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
 - 비례균형의 원칙
 - EU 회원국의 법률에 따르면 공공조달은 무차별, 상호승인, 비례균형, 투명성 등 4가지 기본원칙 및 동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 환경기준의 통합을 인정하고 있으며,
 - 조달과정에서 환경기준은 공급업체 적격심사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기술시방서에 공급업체 요구사항 규정

가. 덴마크

- 덴마크 환경보호법(The Danish Environment Protection Act. June 1994)에 따라 환경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재활용품 또는 재활용가능한 구성요소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공공조달기관은 제품의 가격, 질, 노동환경 등 일반적 선택기준 이외에 제품환경성 평가결과도 동일비중으로 부여하여 구매하고 있음.

나. 독일

- 독일은 연방폐기물관리법(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gesetz)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이 우수한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권장
-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공식지침을 제정, 제품 조달과정에서 환경성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음.
 - 단, 친환경상품이라도 공급자 평가(적격업체 심사)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비용절감효과를 고려하도록 규정

다. 네덜란드

- 네덜란드는 국가환경계획(National Environment Policy Plan, 1990)에서 공공조달이 환경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명시
-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공적조달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중앙정부는 녹색구매정

책을 실천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녹색조달을 지원하고 있음

라. 프랑스

- 프랑스는 공공기관의 공급업체 적격심사기준에 환경적 요구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이러한 환경적 요구사항은 적격심사기준(selection criteria)으로 직접 활용되기보다는 시방서의 기술적 요구사항(technical specification)에 포함시켜 활용하고 있음.

마. 영 국

- 영국은 환경기준을 조달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급업체의 기술기준을 공급자 준수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경쟁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
- 조달심사시 환경기준의 고려정도는 각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.

바. 오스트리아

- 오스트리아는 이미 1980년대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녹색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며,
- 오스트리아 연방조달법(Austrian Federal Procurement Act)과 서비스 조달지침(Norm on Procurement of Services)에서 공급업자는 일정 환경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사. 핀란드 / 스웨덴

- 핀란드와 스웨덴은 조달물품 선정 시 가격, 배달조건, 품질, 심미적·기능적·기술적 특성, A/S, 기술지원, 환경영향 등으로 동시에 고려하여 선택하고 있으며, . 공급업체들은 동심사기준에 따라 순위 평가 후 적격업체 선정

< EU 회원국의 녹색구매 관련규정 >

국가	녹색조달			환경기준		공급업체 평가방식			
	의무 사항	권고 사항	허용	심사 기준	기술 요건	지방자 치사항	환경품질가 격동일시	제품기능 요건규정	경제적 효율성 규정
덴마크	V			V			V		
독일	V			V					V
네덜란드		V		V					
프랑스			V		V			V	
영국			V	V	V	V			
스웨덴		V		V	V	V	V	V	V
오스트리아	V				V	V			
핀란드			V	V		V			
이태리			V	V	V	V			